

4급 및 5급으로의 보통승진심사계획 공고

□ 배 경

-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한 우리 부 공무원의 승진을 통해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 도모

□ 근거 법령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(승진) 및 제40조의 3(승진심사)
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3조(승진소요최저연수) 및 제34조의 3(보통승진심사)
- 「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」 제9조(승진심사계획수립)

□ 승진규모 : 총 39명

| 구 분 | | 승진예정인원 | 승진심사대상*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정 | 4급 | 14 | 53 | 발탁 4명 이내 |
| | 5급 | 14 | 53 | 발탁 4명 이내 (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함) |
| 사서 | 4급 | 3 | 14 |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14명 |
| | 5급 | 4 | 24 | |
| 학예 | 연구관(학예일반) | 2 | 16 | |
| | 연구관(미술) | 2 | 7 |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7명 |
| 합 계 | | 39 | 169 | |

*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자 순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배수 범위 내 해당자

□ 추진일정

- 승진심사계획 공지 : '20. 3. 4.(수)
- 발탁승진 추천 : '20. 3. 4.(수) ~ 3. 6.(금)
-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: '20. 3. 13.(금) 전후
- 승진심사 결과 보고 및 승진임용(발령) : '20. 3. 13.(금) 이후

* 5급의 경우 교육 이수(5.11 - 6.19) 후 결원에 따라 순차적 임용 예정이며,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일정 변경가능

□ 승진심사 기준

▶ 승진심사 기준에 따른 **합산순위를 원칙으로 하는 ①일반승진과 업무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②발탁승진** 방식을 병행

- (일반승진)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범위 내 후보자들 중 승진후보자명부 점수(60점), 다면평가(30점), 기타(10점)의 **합산순위를 원칙으로**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 결정

(행정 : 승진예정인원의 70% 이상 / 학예·사서 : 승진예정인원 100%)

< 일반승진 합산순위 산정방법 >

| 구 분 | 배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○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환산 | 60점 |
| ○ 다면평가(최고 30점, 최저 27점) | 30점 |
| ○ 기타 상훈, 징계 등 | 10점 |
| 합 계 | 100점 |

- * (승진후보자명부) 근무성적평가(80점), 경력평정(20점), 가점평정으로 구성되며, 이를 6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. 명부 내 근무성적평가점은 4급의 경우 최근 3년, 5급의 경우 최근 2년 반영
- * (다면평가) 직전 4회 평가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하되 개인별 평가 횟수가 4회보다 적은 경우 해당 평가점들의 평균값 반영('18.8월, '19.4월, '19.8월 및 '20.2월)

- (발탁승진)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범위 내 후보자들 중 ①실·국·기관의 추천을 받아 ②(행정5급의 경우)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③보통승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서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 결정

- 대상인원 : 승진예정인원의 30% 이내(소수점 절사, 행정직만 해당)

- 대상자 추천(선정)기준

- 해당직급에서의 전체적 보직경로
-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 주요 국정과제·중요직무·쟁점현안 등 담당여부
- 해당직급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성과
- 해당직급 근무기간에 대한 개인 업무역량(추진력, 성실성, 소통능력 등)
- 상급자의 추천총평 등 ※ 각 꼭지별 1/2 페이지 분량으로 추천서 작성

< 실국별 발탁승진 추천가능인원 >

- ▶ (추천인원) 5급·6급 현원의 20% 이내(소수점 절사, 현원 4명 이하 시 1명 추천 가능)에서 순위지정 없이 추천
- * 실국별 발탁승진 추천가능인원 별도 통지 예정
- ▶ (추천단위) 실·국·소속기관 단위로 추천하되, 감사관실·대변인실·운영지원과는 하나의 단위로 함
- ▶ (심사방법) 발탁승진 추천자 중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추천서 등 심사하여 승진자 결정

□ 교육훈련시간 이수조건

- (근거)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(예규 제46호)
- (내용)
 - (의무 교육훈련시간) 산출기준일 기준,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*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
 - *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: (해당 계급 근무연수) × (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)

<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>

| 구분 | 일반직 4급(복수직) 이하(연구사 포함)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| 공통 | 예 외 | | |
| | | 전문경력관 | 관리운영직군 | 방호/운전/위생원 |
| 교육훈련시간 | 연간 100시간 | 연간 40시간 | 연간 40시간 | 연간 12시간 |

- * 산출기준일 :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일 현재
(단,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함)
- (부처공통학습) ‘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’ 또는 ‘해당 계급 근무연수 ×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’의 40% 이상은 부처공통학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
- * 승진임용에 반영되는 필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